
2020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

집필 : 조사연구팀 홍훈기 팀장
정민주 주임

2019. 12. 23.

I. 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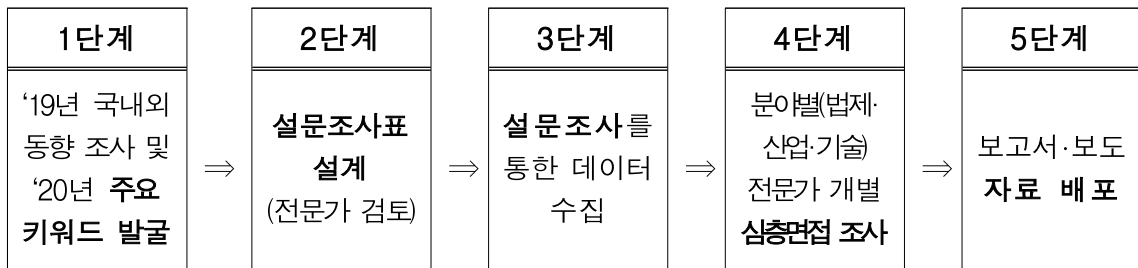
□ 목적

- 차년도 저작권 보호 관련 주요 이슈 전망을 통해 급속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

□ 조사설계

- 조사대상 :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및 산·학·연 전문가 500여명
- 조사방법 : 이메일 설문조사
- 조사내용 : 차년도 예상되는 저작권 보호 주요 이슈
- 조사기간 : 2019. 11. 1. ~ 12. 13. (약 1.5개월)

<조사 추진 절차>



□ 설문 응답 현황

- 저작권 법제(28명), 산업계(44명), 기술(30명), 기타(경제·통계 등 24명) 등 총 126명 응답

<설문 응답자 현황>

구분	법제분야	산업계	기술분야	기타분야	계
응답자(명)	28	44	30	24	126
비율(%)	22	35	24	19	100

II. 조사 내용

(1)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

◆ 2020년에는 '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'가 저작권 보호 이슈 1순위로 전망되었으며, '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(Dark Web)', '저작권료 정산·분배' 등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

<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 순위>

순위	내용	비중(%)
1	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	14.9
2	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(Dark Web)	11.2
3	저작권료 정산·분배	11.1
4	인공지능(AI) 창작물의 보호	10.4
5	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	9.5
6	유튜브,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	9.1
7	실감형콘텐츠(5G)	7.1
8	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	6.7
9	SNS상 저작물 공유	4.9
10	新 EU 저작권 규정	4.2
기타	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 등 6개 분야	10.9

<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전년 순위 비교>

순위	2020년 이슈 전망	2019년 이슈 전망
1	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(14.9%) (▲1위)	SNS상 저작물 공유(17.7%)
2	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(11.2%) (▲2위)	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(15.7%)
3	저작권료 정산·분배(11.1%) (신규)	인공지능(AI) 창작물의 보호(12.3%)
4	인공지능(AI) 창작물의 보호(10.4%)(▼1위)	해외 불법사이트에서의 저작권 침해(12.3%)
5	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(9.5%) (전년 동)	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(9.9%)
6	유튜브,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9.1%) (신규)	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(6.8%)
7	실감형콘텐츠(5G)(7.1%) (신규)	新 EU 저작권 규정(5.7%)
8	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(6.7%) (신규)	공연저작권료(4.9%)
9	SNS상 저작물 공유(4.9%) (▼8위)	-
10	新 EU 저작권 규정(4.2%) (▼3위)	-
기타	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저작권 보호 등 6개 분야	OTT 서비스 등 8개 분야

1위

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(14.9%)(▲1위)

- '1인 미디어' 이용 급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우려 확대로 2020년 저작권 보호 이슈 1위를 차지
 - 짧은 동영상 내의 타인 저작물 일부 사용 등의 저작권 문제를 1인 창작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
 - OSP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저작권 분쟁이 증가
 - 1인 미디어에 대한 시정권고 등 법적 대책 마련 및 합법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

- 1인 창작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
 -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'소재콘텐츠(마이크로콘텐츠)*' 활용 지원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
 - * 마이크로콘텐츠는 스낵영상과 같은 콘텐츠 정보최소단위를 의미함
 - 현재 1인 창작자들은 해외에서 고비용으로 마이크로콘텐츠를 구입
 - 국내 마이크로콘텐츠를 지원하는 신규 서비스 육성을 통해 합법 이용 도모 및 일자리 창출 필요

2위

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(11.2%)(▲2위)

- '해외 불법 사이트'는 현재 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로로, 2020년에도 핵심 이슈
 - '해외 불법 사이트'는 국내 단속 및 소송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무료콘텐츠 제공으로 광고수익 창출

- 정부는 접속차단을 통해 대응해왔으나, △VPN 우회접속, △대체 사이트 생성 등에 따른 한계 발생

- 접속차단이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에 대한 논란·연구 증가

○ 「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이 소비자행동에 미치는 영향」 연구

* 美 카네기멜론대 연구진이 英 정부가 단행한 세 차례의 접속차단 효과를 비교·분석한 결과, 접속차단 조치가 대량 시행되는 조건에서 이용자의 불법사이트 방문수치 감소 효과가 극대화됨

- 접속차단과 더불어, 불법 사이트 신속 탐지 및 통제 기술 확보가 필요

○ 다크웹(Dark Web)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슈로, 2020년에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

- 관련 언론보도 이후 이용자 급증이 우려됨

· 정부 개입 및 사법 관할에 관한 사항 검토와 더불어, 유통 적발을 위한 기술 연구 필요

3위

저작권료 정산·분배(11.1%)(신규)

○ ‘저작권료 정산·분배’는 올해 음원서비스 사이트의 저작권료 편취 사건 및 매장에서의 공연저작권료 징수 문제로 이슈 3위를 차지

- 저작권료 정산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단체가 앞장서서 분배문제를 제도적·기술적으로 개선할 필요

- 2018년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이후에 카페, 주점, 헬스장 등 ‘공연저작권료’ 징수 대상이 확대

· 이에 따른 징수절차나 분배 등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

4위

인공지능(AI) 창작물의 보호(10.4%)(▼1위)

○ ‘인공지능(AI) 창작물의 보호’가 2019년에 이어 2020년 저작권 보호 이슈에서도 상위 이슈로 선정

- 국내 인공지능(AI) 음악 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보호기준 마련 등이 시급

- 영국에서는 인공지능(AI)의 창작물을 인간의 창작물로 허위 등록한 사례가 발생하여 권리 판별 문제가 대두

- AI 저작물 권리 판별 및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위해 ‘인공지능청 (Offi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)’을 신설
 - AI 저작물 관련 주요 논의 대상은 △AI 저작물의 저작물성 여부, △권리의 귀속 주체 및 인정 범위, △보호기간, △인간창작물과 구별 등
 - 데이터베이스처럼 보호기간을 정하거나*, 영리적 목적의 무단이용 시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특례규정 적용 등의 방법이 제시됨
- *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기간은 제작 완료 다음 해부터 5년간 존속(저작권법 제95조)

5위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(9.5%)(전년 동)

- 빅데이터 처리·분석 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제 이슈가 5위를 차지
 - 특히, 인공지능(AI)의 딥러닝 활용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
 -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상품 개발의 활성화로 주목받고 있음
- 현재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,
 - 지재위가 제시한 ‘2020년에 추진할 10가지 지식재산(IP) 정책이슈’에 ‘빅데이터 처리·분석 과정상 저작권 침해 면책’이 포함

6위 유튜브,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9.1%)(신규)

- 2020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경쟁 본격화로 관련 이슈 급증이 예상됨
 - Wavve(국내), 디즈니플러스(해외) 등 다수의 신규 OTT서비스 개시
 - 업체 간 콘텐츠 차별화 목적의 치열한 저작권 확보 경쟁 및 저작권료 산정 등 이슈 발생이 예상됨
-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 등 일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구가 확대
 -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내 저작물 무단이용이 심각함에도, 해외사업자는 현재 시정권고 등 국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실정

7위**실감형콘텐츠(5G)(7.1%)(신규)**

- 5G 도입으로 가상현실(VR)·증강현실(AR) 등 실감형콘텐츠 이용 급증 및 관련 저작권 이슈 확대가 예상됨
 - △기기·콘텐츠 표준화, △품질인증체계 강화, △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규제, △취약한 보호기술 기반 확충 등 단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
- 최근 통과된 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’에 실감형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
 - 실감형콘텐츠 제작과정에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,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

8위**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(6.7%)(신규)**

- 콘텐츠 관련 경상수지는 한류 인기에 힘입어 2014년 처음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한 증가세
 - 동시에, 해외 저작권 피해가 심각하나 대응이 쉽지 않음
- 유럽, 중남미에 걸친 한류열풍 확산으로 현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및 단속 강화 요구가 확대

- 방탄소년단(BTS) 다큐멘터리 영화 ‘번 더 스테이지: 더무비’ 피해사례(2018)
 - * 칠레나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불법복제물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하였는데, 불법유통 당시는 유튜브가 독자적·배타적으로 제공하였을 뿐 DVD 제작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음

9위**SNS상 저작물 공유(4.9%)(▼8위)**

- 작년 조사에서 1위 이슈였으나, 올해 순위가 9위로 급락
 - SNS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 다발 플랫폼이나, 해결책 부족 및 시의성

감소로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

- 저작권 침해를 판별하는 데 사생활 침해 문제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
 - 사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는 SNS 플랫폼이 지니는 본래적 특징이기 때문임
- SNS에서 공유되는 저작물의 광범위성 및 다양한 침해방식 등 저작물 유통 환경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므로 관련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 필요

10위

新 EU 저작권 규정(4.2%)(▼3위)

- EU는 2019년 6월 법제 개선을 통한 기술 변화 대응을 위해 ‘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(이하 “DSM 지침”)'을 시행
 - DSM 지침*의 주 목적은 가치차이(value gap)** 해소
 - * 「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지침(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)」
 - ** 이용자가 향유하는 콘텐츠 가치와 저작자 수익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의미
- 유튜브,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책임을 강화
 - DSM 지침에 따라 일명 ‘구글세’ 부과가 이루어지면 EU 회원국 내 글로벌 IT 기업 압박이 심화
- 일각에서는 국내 도입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데, 국내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우려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